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2014. 3. 7	조례	제1994호
일부개정	2014. 10. 17	조례	제2022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3. 16	조례	제2173호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28호
일부개정	2017. 10. 1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71호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505호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59호
일부개정	2022. 10. 17	조례	제2899호
일부개정	2022. 12. 26	조례	제2927호
일부개정	2023. 3. 10	조례	제29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9. 6. 25, 2020. 6. 19>

1. “직무관련자”란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광명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다. 그 밖에 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12. 20>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2022. 10. 17>

제4조의2 삭제 <2022. 10. 17>

제4조의3 삭제 <2022. 10. 17>

제4조의4 삭제 <2022. 10. 17>

제4조의5 삭제 <2022. 10. 17>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광명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않은 광명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9>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6. 19>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광명시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6. 19>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

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 ·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가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6. 19]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6. 19, 2022.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의정활동요구 자료,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 12. 26>

[제목개정 2019. 6. 25]

제10조 삭제 <2022. 10. 17>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0. 6. 19]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0. 17>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광명시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광명시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6. 19]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③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2. 10. 17>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전문개정 2016. 12. 20]

제12조 삭제 <2016. 12. 20>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 삭제 <2014. 10. 17>

제1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9〉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16〉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5, 2020. 6. 19〉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④ 삭제 〈2020. 6. 19〉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6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2022. 10. 17>

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3. 16, 2016. 12. 20, 2019. 6. 25, 2020. 6. 1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6. 19, 2023. 3. 10>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소속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삭제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제19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6. 19>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④ 의장과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6. 25>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6. 12. 20]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16, 2019. 6. 25>

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4의2. 삭제 <2020. 6. 19>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 6. 25>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 3. 16, 2019. 6. 25>

1. 광명시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6, 2019. 6. 25>

1.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 <개정 2016. 3. 16, 2019. 6. 25>

⑥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6>

⑦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16>

제24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3. 3. 10>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③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광명시의회사무국 자문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3. 16, 2023. 3. 10>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제29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2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제33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2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6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0. 1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5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25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7 조례 제2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2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4. 25>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개정 2018. 4. 2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2. 10. 17>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2016. 12. 20>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 10. 17>

[별지 제2호의1서식] 삭제 <2022. 10. 17>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22. 10. 17>

[별지 제2호의3서식] 삭제 <2022. 10. 1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 10. 17>

[별지 제4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신청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적			
	지원기관 (단체)		지원 받은 내역	
	기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출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25〉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	----	--	---------------	--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	--	--	--	--

장소				
----	--	--	--	--

일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	----------------------------------	------	--------------------------------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액을 기재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설 2016. 12. 20>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월원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2019. 6. 25>

[별지 제8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신고자 (서명)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 1〉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 명 (서명)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 12. 20>

